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85
----------	-----

제출연월일 : 2008. 1. 11.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17”을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2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7”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제16조)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

제26조 (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년 1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월 11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8년 1월 14일
3. 상 정 일 자 :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8. 1. 23)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감사관 손성도)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박춘용)

○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